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4. 21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4. 10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0. 4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4. 21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 이용옥

### 가. 제안이유

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존치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1)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0조의2)

- “2020년 6월 30일” 을 “2024년 12월 31일” 로 함

## 3. 검토보고 (최종익 전문위원)

### 가. 제안경위 및 개정취지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.4.10. 제출되어, 의안번호 제23호로 2020.4.13.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- 개정취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음.

## 나. 주요 검토의견

### (1)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

- 본 건은 당초 상위법인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을 근간으로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.3.2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를 제정한 이후 2015.7.1.자로 같은 법 제명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 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<sup>1)</sup>·명시하는 등 일부개정(2015.9.24.)을 통하여 그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나,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‘여성발전’에서 ‘실질적 양성평등 실현’으로 전환되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임.

〈표 1〉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

(단위: 억 원, 2020.4.10. 기준)

연도	2006	2007	2008	2009	2011	2017	2018
총액	5	3	5	5	1	1	1

- 또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정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, 여성네트워크 및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통계 등 다양한 정책을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하여 실시하였

1) 제4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5.9.24]

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기금 사용<sup>2)</sup>총액은 최근 5년간 2억 4662만원으로 연평균 4932만원을 집행하고 21억 3804만 1천원이 익년도 기금으로 이월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유지됨에 따라 향후에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음.

〈표 2〉 연도별 양성평등기금 집행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14년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
이자수입(a)	73,341	44,698	63,849	45,212	39,258
집행액(b)	60,571	44,620	57,051	46,394	37,984
집행비율(a/b)	82.5	99.8	89.3	102.6	96.7
기금잔액	1,929,036	1,929,114	1,937,949	2,036,767	2,138,041

(표1,2 출처: 마포구 연도별 기금운용계획)

## (2) 조례조문 검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0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‘2020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’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<sup>3)</sup>(기금의 존속기한)에서 정한 “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”의 규정에도 부합하다 판단됨.

## (3) 종합의견

- 이상의 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

2) 제41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<개정 2015.9.24.> 1. ~ 6.(생략)  
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.  
 3)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  
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  
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  
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  
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책무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와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4)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바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4)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